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심의 최종견해 이행 중간보고서

I. 도입

1.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8차 정기보고서(CEDAW/C/KOR/8)를 심의하고, 위원회의 최종견해(2018.3.14) 중 제13항, 제23항의 (b)와 (d), 제25항의 (b)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2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제출한다.

II.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조치

가. 최종견해 13항 이행을 위한 조치

2.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8월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8-2022)」에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을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과거 제출된 정부 법률안(2007) 및 차별금지와 관련된 외국 입법례와 판례를 연구해왔으며, 기본법 제정 및 입법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나. 최종견해 23항의 (b) 이행을 위한 조치

3. 대한민국 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하여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해왔다. 정부는 2018년 11월 관계부처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2019년 7월 「가정폭력 방지대책」 내용을 조문화하여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를 추가하여 가해자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자와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임시조치 유형에 ‘유치장 유치’를 추가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11월 의원 발의하였다. 법무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이주여성 피해자 포함)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 여성 긴급전화1366,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을 통해 상담, 일시 보호, 장기 보호, 의료·법률 지원,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최종견해 23항의 (d) 이행을 위한 조치

4. 대한민국 정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해 왔으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에 따라 2018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사각지대 없이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을 기반으로 5개년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매년 중앙 부처 및 지자체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에 대해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등도 새롭게 추진하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 2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확정하고, 온라인 성범죄 등 여성폭력에 대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였다.
5. 불법촬영 및 유포 등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증가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범부처 합동으로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후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추진 협의회’ 및 산하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대책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였다.
6.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신속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2018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여 심의 기간을 기존 10.9일에서 3일 내로 단축하였으며, 2019년 9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하여 24시간 내 신속심의 체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 전자심의 및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9.12월)하였다.

7.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촬영 및 유포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관련 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가) 2018년 12월 온라인 성폭력의 처벌 강화를 위하여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의 법정형을 상향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시행하였다. 위 개정 법률은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그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촬영대상자의 동의 하에 촬영하였으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와 동일하게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 7년 이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편집·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의 근거를 포함한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2020년 3월 의결되었다.

(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신속하게 삭제 및 차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정보통신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할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미이행할 시 시정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를 신설(2018.12월) 하였으며, 수사 기관이 요청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즉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삭제·차단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을 개정(2018.12월)하였다.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2018년 4월부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회복에 필요한 상담지원과 불법촬영피해영상물의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서비스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에 필수적인 지원서비스로 센터 운영 이후 지난해까지 12만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포함하여 총 13만5천 건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라. 최종전해 25항의 (b) 이행을 위한 조치

8. 대한민국 정부는 예술홍행비자로 입국한 이주민 여성의 인권보호 및 차별 방지를 위해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2019년 6월과 10월, 2회에 걸쳐 관계부처 및 기관, 지자체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성매매 알선 강요 등 인권침해 및 불법행위, 외국인 종사자의 임금체불 갈취, 예술홍행 비자 발급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 하였다.
9. 법무부는 2014년 12월 30일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3(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을 신설하여 성매매, 성폭력,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관련 수사나 재판 등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6년 9월과 2017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예술홍행비자(E-6-2) 제도를 개선하였다. 관련 내용으로는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3년 이상의 공연 관련 분야 활동경력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전용 대기공간이 없거나 폐쇄된 룸 등이 있는 경우 사증발급을 제한하며, 불법체류를 30% 이상 국가의 경우 사증 발급 시 영사 인터뷰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였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필리핀 연예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입국 시 필리핀 노동청이 발급한 해외취업허가서를 반드시 소지하도록 하고, 모든 예술홍행비자 소지자의 외국인 등록 시 기초법질서, 인권침해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등 인권 침해 예방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10.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이탈’ 여성이 생계 문제로 성매매 등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고자 북한 ‘이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 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특화된 직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다.

(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초기 적응 교육 및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기관인 하나원에서는 15개의 여성 특화 직종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나원 수료 전 개인별 맞춤형 진로 설계 상담 및 취업분야 생애 설계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원 수료 이후에도 북한 ‘이탈’ 여성이 선호하는 직무교육과정으로 요양보호사, 미용기능사, 한식조리 기능사, 피부미용 기능사 등의 과정을 운영하여 이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탈북민에 대한 종합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자활사업단과 자활사업장 운영 지원 및 북한 ‘이탈’ 여성 특화 직종 발굴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거주지 소재 지역적응센터에서는 취업전문상담사가 북한 ‘이탈’ 여성 개개인의 요구, 관심사항, 문제 등을 파악하고 개인별로 맞춤형 취업지원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 대상 정보와 연계하여 신체적 질병, 부양가족, 양육 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려워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탈북민을 발굴하여 긴급생계비 지급 등 생활안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 탈북민 대다수가 여성(입국인원의 80% 상회)임을 고려하여 북한 ‘이탈’ 여성의 건강한 성 역할 및 인권 등에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북한 ‘이탈’ 여성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처음 하나원에서 기본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관련 피해예방 구제 과목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탈북민이 하나원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각 지역으로 전입하게 되면 거주지에 소재한 지역적응센터에서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는데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외부 전문강사를 통해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였다.